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6616 판결 [주식 매매대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66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5271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윤태호, 이한솔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윤문수

변론 종결2023. 1. 13.

판결 선고2023. 2. 1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5271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996,543,782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매도청구권(뜻옴션)"을 각 "매수청구권(뜻옴션) 또는 환매청구권"1) 으로, 제6면 하단 제6행의 "제4의 가.항"을 "제2의 가.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3항('1. 기초사실' 및 '3. 당사자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4.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I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하단 제7행부터 제16면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환매의무 인정 여부

1) 이 사건 약정서 (B)조는 "(1) (중략) 또는 (2) 소외 회사가 2018. 6. 30.까지 적격 IPO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은 상기 (1)항 또는 (2)항에 의해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가 발생하는 일자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당시 원고가 보유하는 대상주식 및 추가주식을, 총 매매대금에 원고로부터 환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2)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이 그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대상주식 등을 환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2)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는 매수청구권(풋옵션) 또는 환매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데, 30영업일 이내에 매수청구권(풋옵션) 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30영업일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풋옵션) 또는 환매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 (B)조는 소외 회사가 2018. 6. 30.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가 발생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그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환매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이 환매의무 발생 후 30영업일 이내에 환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상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 이행과 동시에 원고는 주식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주식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은 위와 같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약정서 (B)조는 '같은 조 (1)항 또는 (2)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매도인들이 환매의무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보유한 대상주식 등을 환매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위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환매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간이 환매의무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임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위 조항에는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가 발생한다거나 30영업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권리가 소멸된다는 내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되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은 당시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증인 I의 증언, J의 진술서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및 당시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 가능성 여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서(B)조는 행사기간을 정한 풋옵션이나 환매청구권이 아닌 그 문언의 내용 그대로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특히 이 사건 매도인들 중 I 등 다른 매도인들은 환매의무 발생일인 2018. 6. 30.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20. 12. 21. 원고와 이 사건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해당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 이에 비추어 다른 매도인들은 이 사건 약정서 (B)조에 따른 매도인들의 환매의무가 그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는 위 조항이 30영업일이라는 행사기간을 정한 풋옵션을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④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자문을 제공한 T 상해사무소 직원 U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 측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이메일에서 이 사건 약정서(B)조를 가리켜 '이 사건 약정서 내용 중 IPO 페널티 부분'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환매약정상 'IPO Commitment(IPO 약정)'는 환매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풋옵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사한 거래를 많이 진행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상 풋옵션을 거래 조건에

추가할 때는 'Put O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풋옵션 행사 주체, 가액 및 기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약서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소장이나 이 사건 합의서 초안 또는 S과 Q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제1호증)에서 '풋옵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서(B)조가 풋옵션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소 제기 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2018. 6. 30.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재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은 실제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닌 O, 피고, Q을 그 합의 당사자로 하고 있는 점, ㉢ S과 Q 사이의 대화 당시 원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환매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고, 위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S이 '통상은 이런 풋옵션에 대해서 그 기한을 정하는데, 여기에는 기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풋옵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B)조가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를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환매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환매의무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만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가 발생하고, 위 조항이 단순히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B)조는 그 문언의 내용상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만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서에 나타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들의 의사는 소외 회사가 2018. 6. 30.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이 환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바, 위 조항의 내용이 환매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환매청구권의 행사나 그 행사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 발생 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도인들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 사건 매도인들의 환매의무 발생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법의 법리나

상관례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30.까지 소외 회사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B)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환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환매대금 5,996,543,7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민달기

판사김용민

별지

1) 피고는 "매도청구권(풋옵션)"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매수청구권(풋옵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는 2022. 12.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약정서 (B)조가 주위적으로 원고의 풋옵션을, 예비적으로 원고의 환매청구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선택권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